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8240호, 2004. 1.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2호중 "1제곱킬로미터"를 각각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60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3년전"을 "5년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 각목의 1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

만,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탁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삭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形)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24조제1항중 "5제곱킬로미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중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를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

여야 한다.

제46조제9항(중전의 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호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전의 제9항)중 "제3항 및 제6항"을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자원요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구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8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9인"을 "14인"으로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별표 1 제1호마목 허가기준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근도로와 연결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7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

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20 제1호사목 내지 카목을 각각 아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0 제2호차목 본문중 "경우에는 합계"를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하고, 동호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타목 내지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6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2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아동관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수시설규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및 휴게소

별표 26 제3호마목중 “적조방지 및 어장정화”를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준설”을 “준설,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별표 27 제1호바목 내지 자목을 각각 사목 내지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27 제2호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제1항의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 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7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129호, 2004. 1. 29.)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④ 그 밖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

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 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시설점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명령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폐쇄명령·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사항

제15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계획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서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